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퇴직급여 지급 전 금융교육 의무 실시 등 〉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973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퇴직급여 지급 전 금융교육 의무 실시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12일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되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피싱사기나 리딩방을 통한 투자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금융교육은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예방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48조).

정한다. ④ · ⑤ (생략) <신설> <신설> 제4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3. ~ 5. (생략) ③ (생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u>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전에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u> <u>⑦ 제2항 및 제6항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u>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32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전에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u>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30조 등에서 금융교육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현재 금융교육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복잡해지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한번에 큰 규모의

돈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직급여 지급 시기에 특히 금융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전에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개정안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폭넓게 강화하고 금융범죄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현행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둘째, 근로자들마다 퇴직급여 지급 시기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퇴직 시마다 교육의 위탁계약, 교육 실시 등을 관리하는 것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에게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바, 그럼에도 퇴직 시점에 별도의 교육을 추가 의무화하면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최근 2026. 2. 6. 발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TF」 공동선언문에서도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노사정이 합의한 바 있고, 특히 ‘교육’ 등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동선언에 명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